

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(2021. 12. 17.)  
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 
한다.

2021년 12월 29일

목포시의회의장 박 창 수



*Handwritten signature in blue ink.*

목포시의회 규칙 제10호

###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”를 “「지방  
자치법」 제83조”로 하고, “목포시 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목  
포시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라 한다)”을 “목포시의회 의원(이하  
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의회”를 “목포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제63조제1항”을 “제7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는 삭제한다.

제19조의2 제1항 중 “법 제66조의2 제1항”을 “법 제7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 2 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 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발언신청을 허가할 경우 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. 다만,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④ 의원은 회기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41조제1항 중 “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·거수 또는 전자투표

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.”를 “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·거수하게 하거나 전자투표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유무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”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.

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 또는 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제4항은 삭제한다.

제44조 중 “결과를 선포한다”를 “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표결 수

15. 거수·기립 표결, 전자투표,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성·반대·기권 의원 성명

제48조제1항 중 “일반”을 “주민”으로 하고, “그러나 의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”를 “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

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.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5항 중 “일반”을 “주민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4항은 삭제한다.

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 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2 (집행기관 등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) ①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자를 결정한다.

②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.

③의장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 없이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.

제70조제1항 “법 제79조제1항”을 “법 제9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2조제1항 중 “법 제86조”를 “법 제98조”로 하고, 제3항 “법 제83조”

를 “법 제95조”로 하며, 제5항은 삭제한다.

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2조의2 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② 자문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,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,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1. 변호사, 대학교수

2. 전직 지방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

3. 지방자치 전문가
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최한다.

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제83조제1항 중 “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”를 “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9장 제87조 및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장 주민조례발안

제87조 (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)

- ①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-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

제88조 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

-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권자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,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----- -----목포시의회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 (등록) 의회의원(이하 "의원"라 한다)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	제2조 (등록) 목포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
제4조 (개회식)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.	제4조 (개회식) 목포시의회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
제14조 (회의에 관한 선포)	제14조 (회의에 관한 선포)
① ( 생략 )	① ( 현행과 같음 )
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3조제1항의 정족수	② ----- ----- ----- -----제72조제1항-----



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희를 선포할 수 있다.

③ ( 생략 )

제19조 (의안의 제출·발의) 의회  
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 
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 
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재적의  
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 
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 
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

제19조의 2 (조례안예고) ① 의장  
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 
때에는 법 제66조의2 제1항에  
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
그 취지·주요내용·전문을 공보  
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
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③ ( 현행과 같음 )

<삭 제>

제19조의 2 (조례안예고) ①-----  
-----  
----- 법 제77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32조의 2 (5분 자유발언) ① 의  
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 
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 
과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  
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  
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 (이  
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.)을  
허가할 수 있다.

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

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발언신청을 허가할 경우 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. 다만,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④ 의원은 회기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41조 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·거수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.

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이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.

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

41조 (표결방법) ① -----  
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·거수하게 하거나 전자투표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유무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<삭 제>

③ -----

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.

제44조 (표결결과선포)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.

제45조 (회의록의 작성)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
1.-13. ( 생략 )

<신 설>

<신 설>

14.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8조 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

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며, 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. 그러나 의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공공의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1항 -----  
-----

<삭 제>

제44조 (표결결과선포) -----  
----- 결과를  
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.

제45조 (회의록의 작성) ① -----  
-----

1.-13. ( 현행과 같음 )

14. 표결 수

15. 거수·기립 표결, 전자투표,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성·반대·기권의원 성명

16.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8조 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 
①-----주민-----  
-----  
----- 다만,  
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

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
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 
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  
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 
수 있다.

②-④ ( 생략 )

⑤공표할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  
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제52조 (위원회의 심사)

①-③ ( 생략 )

④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 
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  
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 
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 
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와의  
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 
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 
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.

②-④ ( 현행과 같음 )

⑤ ----- 주민 -  
-----.

제52조 (위원회의 심사)

①-③ ( 현행과 같음 )

④ <삭 제>

제52조의2 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 
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  
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60조의2 (집행기관 등 각종위원  
회 위원 추천) ①의장은 법령  
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 
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
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 
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자를

제70조 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 
답변서제출) ①의장은 법 제79  
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 
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 
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  
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 
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  
를 제출하게 한다.

제82조 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 
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 
징계대상의원(이하 “징계대상  
자”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  
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  
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( 생략 )

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

결정한다.

②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 
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  
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  
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 
결정한다.

③의장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  
거 없이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  
청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  
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.

제70조 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 
답변서제출) ①----- 법 제91  
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82조 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 
----- 법 제98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 현행과 같음 )

③ -----

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

④ ( 생략 )

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④ ( 현행과 같음 )

<삭 제>

제82조의2 (윤리심사자문위원회)

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② 자문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,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  
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 
하며,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 
수 있다.

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 
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1. 변호사, 대학교수

2. 전직 지방의원 또는 전직 공  
무원

3. 지방자치 전문가
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 
인정하는 사람

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  
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  
의 소집요구로 개최한다.

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3  
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  
고,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출석  
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 찬성  
으로 의결한다.

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 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
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  
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 
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제83조 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 제8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,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83조 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 -----

-----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9장 주민조례발안

제87조 (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의의신청) ①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



<신 설>

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

제88조 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

각하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권자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